

#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관련 법령 등 소개

## □ 관련 법령 안내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6항

- 관계 행정기관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2

- 법 제19조제6항에서 “소규모 취약시설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 ②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 ③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 ④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 ⑤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그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자료를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고 및 제출은 정보화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 □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 제19조에 따라 제 1, 2, 3종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토목시설 등의 시설이며,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분류와 대상 범위

분류	대상 범위
사회복지시설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질병관리청 소관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아케이드, 고객편의시설, 건물식 주차장)
토목시설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②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③ 「도로법」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옹벽 및 절토사면 ※ 급경사지 범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급경사지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
기타	①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공중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및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 부속된 옹벽, 절토사면 그리고 민원분쟁소지가 있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함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함.

\* 관리주체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함.

## □ 제출 안내

○ 제출자 :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9조 제3항)

- 1)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이하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라 한다)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가 시·도지사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 3) 그 외의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예시)

종류	담당자
경로당	OO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담당 주무관
어린이집	OO광역시 OO구청 보육여성과 어린이집 담당 주무관
전통시장	OO군청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담당 주무관
옹벽	OO시청 안전총괄과 토목시설 담당 주무관

\* 각 상황별 시설, 지자체, 담당과에 대한 예시이며, 해당 명칭은 각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광역시·도의 담당자분들께서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서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작성 현황을 아래의 시스템에 로그인하시어 확인하시고, 최종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출기한 : 2023년 10월 31일까지

○ 제출 시스템 :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sfms.or.kr](http://www.sfms.or.kr))